

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파리조약을 중심으로-

정재환** · 이봉수***

요 약

이 논문은 국제지적재산법이 어떠한 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관련한 각종 조약과 협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내용의 연구이다. 현실적으로 지적재산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사업 등의 해외 투자시에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리조약성립되기 전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특허인정시기와 내용, 개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지적재산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TRIPS 협정 외에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에 관한 내용의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과 함께 단순히 국제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지적재산법이나 국내 소송제도의 상위등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적재산권, 파리조약, 국제지적재산권, TRIPS

* 이 논문은 2011년 5월 13일 본 경영사학회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경영사상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거래에서 지적재산권의 역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최단옥, 이남규 교수님으로부터 정확한 지적과 조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제1저자.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지적재산권의 비중은 현재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재화이다. 이들 재화에서 미국은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미국은 제조업부문이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분산되고, 지적재산권 관련한 IT등의 산업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은 寡占에 의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특허를 반대하였다. 1952년에 특허법의 개정을 계기로 극단적인 반특허 성향은 약화되었으나 기술독점에 대한 경계심은 남아 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가 미국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선 국내법상으로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81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강화를 명문화하여 1982년에는 지적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연방순회법원(CAFC)설치, 1984년의 의약품특허 보호기간의 회복조치, 1988년의 포괄무역법의 성립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와 같은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국제적으로 파급시켜 지적재산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나라에 대해서는 통상법 301조 등에 의한 경고와 그에 따른 적용을 위한 2국간 교섭을 적극적으로 개시하였다. 이는 특허정책의 국제화를 시도한 것으로 지적재산권마찰이 현실화된 시기였다.

현실적으로 지적재산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자회사설립이나 합병사업 등의 해외투자시에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자체가 유비쿼터스를 가진 무체재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이기 국외적 요소를 가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분쟁도 증가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도 이에 따른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연구된 국제지적재산권 관련한 주요학회의 연구논문으로는 Jane K.(삭제) Winn(2010)이 발표한 미국의 지적재산권담보에 관한 연구로서 “미국지적재산권담보에 관한 연구”가 있고, 지적재산권정책을 강화하면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밝힌 김상춘·김영재(2008)에 의한 “지적재산권정책과 경제성장 재조명” 등의 논문이 있다. 허홍호·정운세(2009)는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FTA를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순수한 국내적인 측면의 지적재산법만을 대상으로 연

구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국제적 측면의 지적재산법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지적재산법이 어떠한 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관련한 각종 조약과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史的인 연구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논문의 II장에서는 국제지적재산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규율대상이 되는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지적재산권이 일정 권리를 의미하고 된 기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파리조약성립전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특허인정시기와 내용 그리고 파리조약 성립까지의 역사 및 조약성립과 개정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국제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그 특징

1. 지적재산권 개념과 국제성

국제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TRIPS 협정이 발효한 1995년 전후부터 각종 서적이나 출판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WTO체제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TRIPS협정에 의해 공업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전체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그때부터 지적재산권은 글로벌한 권리가 되었던 것이다(Drahos, 2002, 10). 이는 새로이 성립된 WTO의 부속협정인 TRIPS 협정에 의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글로벌화에 따른 지적재산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WTO의 TRIPS협정을 지적재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그 규율대상의 특징에 의하면 有體物과 같은 특정국가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屬地性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국의 국내법제도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서부터 각국이 합의하여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이 형성되어 120년 이상으로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었다. 국제지적재산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TRIPS협정 외에 전통적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조약을 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과 함께 단순히 국제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지적재산법이나 국내 소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인류최초의 지적재산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표이다. 약3500년 전에 陶工들이 자신의 도예품에 標章을 붙여 자신이 만들었다고 표시한 것이 시초이다(Doris

2000, 10). 고대 그리스에서도 조각, 그림, 화병, 유리공예품 등에서 상표나 그와 유사한 표시가 있었다(Ladas 1938, 6). 중세에는 길드에서도 표장을 하였다. 상표법은 영국 및 미국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로 발전하여 영국에는 1862년 8월 7일에, 미국에서는 1870년 7월 8일에 최초로 법으로 제정되었다.

특허에 대해서는 1474년 3월 19일에 제1호가 부여되어 그 후에 1474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신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한 자에게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있던 베네치아의 특허제도가 저작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용되었다. 근대 특허제도는 1623년의 제임스 1세에 의한 전매특허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볼 수 있다. 그 조례는 외국인을 포함한 최초의 발명자에 40년간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외국으로 기술자의 유입을 촉진하여 영국의 섬유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이 발명자권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of Right of Inventors)로서 특허법의 모델이 되었다(Kohler 1980). 예를 들면 당시의 영국 식민지에 있던 매사추세츠 주는 1641년에 미국 최초의 특허법을 제정하였다(Ladas 1938).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1710년의 영국의 ‘The Act of Anne’이 세계최초의 저작권법인데, 당초에는 서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술이나 연극까지를 보호대상으로 확장시켰다.¹⁾ 178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헌법에서 과학 및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 및 발명자에 그 저작 및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 저작권 및 특허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1790년에 최초의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1791년의 프랑스 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인권에 기초한 재산권으로 선언하였고, 1796년에 프랑스 특허법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이를 고안한 자에게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일정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 발견 및 발명도 그를 만든 자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여 심사 없이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1793년 법에서 저작자에 그 작품의 공연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프랑스혁명 후에 그와 같은 발명자의 권리나 저작자의 권리를 자연권으로서 재산권의 의미로 보는 견해는 당시의 특허제도나 저작권제도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세기말에 독일의 Joseph Kohler와 벨기에의 Edmond Picard가 無體財産權(Immaterialgüterrechte) 및 지적재산권(Droits intellectuels, jura in re intellectuuali)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유체재산에 관한 내용과는 다른 저작물,

1) 구체적으로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John Feather, 1980, The Book Trade in Politics: The Making of the Copyright Act of 1710, Publishing History, 19(8), P. 39.

발명, 상표 등의 지적창조에 의한 새로운 종류의 재산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나 발명자 등의 권리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이 착안한 것은 로마법 이래 물권, 채권, 인격권이라는 권리의 삼분법이 아니라 저작물이나 발명자 등의 지적창조자의 인격권과 지적창조물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이 긴밀하게 결합한 새로운 권리의 성립에 대한 것이었다(Ladas 1938, 9). 그래서 그러한 권리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어 지금까지 취급할 수 있었던 권리의 보호를 통합적으로 촉진하여 이러한 권리의 성질들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과 산업재산의 국제적 규율을 마련하는데 따른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파리조약상의 공업소유권과 베른 조약상의 저작권이 포함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파리조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스톡홀름개정 조약상의 공업소유권에 대해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보호가 권장되고 있다.³⁾ 또한 공업소유권 용어는 가장 광의로 해석되어 본래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채굴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상품, 예를 들면 술, 곡물, 담배, 과일, 가축, 광물, 맥주, 꽃, 곡분에 대해서도 이용되는 베른 조약의 파리개정조약상의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에 대해서서적, 소책자 그 외의 문서, 강연, 연설, 설교 그 외의 동일한 성질의 저작물, 연극용 및 작곡용의 저작물, 무용 및 무연극의 저작물, 작곡, 영화 및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사진 및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소묘, 회화, 건축, 조각, 판화 및 石版畫의 저작물, 응용미술의 저작물, 圖解 및 지도, 지리학, 지형학, 건축학 그 외의 과학에 관한 도면, 약도 및 모형, 학술 및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⁴⁾ 여기에서 저작권접권은 직접 포함되지 않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

2) Jerome. H Reichman(1995), Charting the Collapse of the Patent-copyright Dichotomy: Premises for a Restructure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13 Cardozo Arts & Ent. L. J. P. 480.

3) 파리조약 제1조 2항은 다음과 같다.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4) 파리조약 제1조 3항에 "Industrial property shall be understood in the broadest sense and shall apply not only to industry and commerce proper, but likewise to agricultural and extractive industries and to all manufactured or natural products, for example, wines, grain, tobacco leaf, fruit, cattle, minerals, mineral waters, beer, flowers, and flour" 그리고 제2조 1항은 "Nationals of any country of the Union shall, as regards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enjoy in all the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the advantages that their respective laws now grant, or may hereafter grant, to nationals; all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나 레코드 등의 저작물도 지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1950년대에 이 조약들의 합동사무국은 ‘지적재산에 관한 합동국제사무국(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약칭 BIRPI)’으로 불리워졌다.⁵⁾

이에 대해 1967년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WIPO)를 설립한 조약에서는 ‘지적소유권이란 문예, 미술 및 학술의 저작물, 연출가의 연출, 음반 및 방송,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 및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술분야에 있어서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⁶⁾고 하여 파리조약이나 베른 조약보다 더 폭넓게 규정되었다.⁷⁾

그러나 이들 조약은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의 교섭을 통하여 성립한 TRIPS협정은 제2부 제1절에서 제7절까지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⁸⁾ 저작권 및 관련한 권리,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⁹⁾,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개시되지 않은 정보의 보호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

동시에 가맹국에 파리조약의 스톡홀름 개정조약과 베른조약과 베른조약의 파리개정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¹⁰⁾ 또한 파리조약, 베른조약, 인접권에 관한 로마

specially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Consequently, they shall have the same protection as the latter, and the same legal remedy against any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and formalities imposed upon nationals are complied with”으로 규정되어 있다.

- 5) Graeme B. Dinwoodie, William O. Hennessey and Shira Perlmutte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Documentary Supplement*, Lexis Nexis, p.3.
- 6) 동협정 2조에 “Unions shall mean the Paris Union, the Special Unions and Agreements established in relation with that Union, the Berne Union, and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designed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ose administration is assumed by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Article 4(iii)”로 규정되어 있다.
- 7) 동협정 3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are:(i)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where appropriate, in collaboration with an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i) to ensure administrative cooperation among the Unions.”
- 8) 동협정 1조 2항에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are the subject of Sections 1 through 7 of Part II”로 하여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였다.
- 9) 식물의 품종 보호에 대해서도 27조 3항 b호에 규정하였다.
- 10) 동협정 2조 1항에 “In respect of Parts II, III and IV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comply with Articles 1 through 12, and Article 19, of the Paris Convention (1967)”으로, 9조1항은 “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1. Members shall comply with Articles 1 through 21 of the Berne Convention (1971) and the Appendix thereto. However, Members

조약 및 집적회로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조약에 기초한 기존의 의무에서 가맹국이 상호부담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¹¹⁾

2. 국제지적재산법의 의의와 특징

국제지적재산법이란 파리조약이나 베른조약 등의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조약을 연상하며, 그와 같은 조약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국제지적재산법이라는 제목하에 주요선진국이나 특정국의 지적재산법을 소개하는 것도 있다. 국제지적재산법은 涉外的인 지적자산을 둘러싼 법적인 현상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제지적재산법이라는 명칭은 원래 규율대상인 저작물이나 발명품의 국제적인 성격으로의涉外성(외국적 요소를 가진)이나 권리주체의涉外성을 말하며, 法源 자체가 국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제법의 범원으로서 의의가 높은 분야인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적재산의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국제법상의 권리주체가 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이기에 때문에 國際法源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국별로 헌법상의 질서에 의해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관한 각국의 법제를 보면 조약규정외에 입법기관에 의해 입법되어 지지 않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一元說과, 어디까지나 조약은 체결국간에 조약의 이행의무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내법적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에 의한 국내입법이 필요하다는 二元說을 가지는 나라가 있다. 영국이나 덴마크에는 국왕이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는 이원설이 있다. 이원설을 채택한 나라에 대해서는 조약에 확실히 정한 문제라 할지라도 국제법원만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國內法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원설을 채택한 나라는 그 나라의 행정기구나 입법기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 분쟁에 따른 소송에서 당해 법원이 결정한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사법기관에 제기되어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베른 조약에는 다른 나라에서 자기 집행적으로 해석하는 조항과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1988년 베른조약에 가입할 당시 의회에서는 그 조약이 자기집행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¹²⁾ 베른 조약이

shall not have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rights conferred under Article 6bis of that Convention or of the rights derived therefrom”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동협정 2조 2항에서 “Nothing in Parts I to IV of this Agreement shall derogate from existing obligations that Members may have to each other under the Paris Convention, the Berne Convention, the Rome Convention and the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으로 규정하였다.

12) 베른조약 36조 1항에 “이 조약의 체결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기집행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Goldstein 2001, 15). 또한 국가는 항상 國際法源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미국의회에서도 국제법원에 위반한 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1909년 미국연방최고법원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사건¹³⁾의 판례(213 U.S. 347, 352)에 의해 미국법원은 國際法源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Goldstein 2001, 15).

또한 조약의 성질에서도 차이가 있다. EC법원 판결의 예를 들면 ‘Portugal/Rat’ 사건 판결((EuGH, Rs.C-149/96, 23.11.1999)에서 WTO설립협정의 특수한 성질은 그 의의 구성 및 문언을 고려하여 그 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성질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직접 적용성의 문제는 WTO설립협정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TRIPS협정의 규정에 대해서도 배제된다.¹⁵⁾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國際法源 만이 아니라 국내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표 1〉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

	장소	발효	조약명	한국관련사항
1883년	파리	1884년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980년5월발효 (조약 제707호)
1957년	니스	1961년	標章(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1999년1월발효 (조약 제1472호)
1967년	스톡홀름	197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79년3월발효 (조약 제676호)
1970년	워싱턴	1978년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1984년8월발효 (조약 제840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13) <http://supreme.justia.com/us/213/347/case.html>

14) Peter-Tobias Stoll, Jan Busche, Katrin Arend, 2008, WTO-(가운데 바 1개 제거)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P. 909.

15) Busche, Stoll, TRIPS. S, 47f.

1971년	스트라스부르크	1975년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협정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99년10월발효 (조약 제1494호)
1977년	부다페스트	1980년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타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1988년3월발효 (조약 제947호)
1989년	마드리드		標章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994년	마라케시	1995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부속서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년1월발효 (조약 제1265호)

자료 : Alexander Stack, 2011, International patent law : cooperation, harmonization and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WIPO and the WTO, Edward Elgar, pp.65-95 및 WIPO홈페이지(<http://www.wipo>),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서 작성함.

지적재산권을 추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지적창조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에 의한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상을 분류하면 산업적 창작물, 영업표식, 문화적 창작물의 3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산업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고찰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권, 意匠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권, 신품중의 종묘를 대상으로 하는 육성자권, 반도체의 회로배치를 대상으로 한 회로배치이용권, 비밀의 기술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노하우 등이 있다. 영업표식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는 상품이나 노역의 제공자를 나타내는 標章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및 나라를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명칭이 있다. 문화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 권리로서 문학이나 미술 등의 저작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연출, 음반, 방송에 대해서 인정하는 저작권접권이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종묘법,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반도체집적회로배치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법이란 법에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III. 파리조약의 성립과 전개

1. 파리조약성립전의 공업소유권 보호

1) 각국의 특허인정시기와 내용

일찍이 영국은 왕실재원을 위해 왕실에 재정적 특권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 특권은 1560년대 이후 독점적인 특허의 수가 증가하여 특허의 남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1623년에 의회는 왕실거래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제품의 ‘최초의 발명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The 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하였다. 이 제도가 영국의 식민지와 유럽각국에 전해졌다.

〈표 2〉 각국의 특허인정 시기

	국 별	내 용
1623년	영국	The Statute of Monopolies
1762년	프랑스	1791년에 발명자권리 인정한 포괄적 특허법 제정
1787년	미국	헌법에서 특허 인정
1812년	러시아	특허법제정
1815년	프로이센	”
1817년	샤르디니아	”
1833년	스페인	”
1834년	스웨덴	”

자료 : Jerome. H Reichman(1995), Charting the Collapse of the Patent-copyright Dichotomy: Premises for a Restructure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13 Cardozo Arts & Ent. L. J.

1762년에 프랑스 루이 15세는 발명자의 특허를 15년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791년에 프랑스 헌법의회는 창조물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인권에 기초한 재산권으로 인정한 포괄적인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1787년에 미국의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과학이나 유익한 기술 및 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술가나 발명가에 그 문서 및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기간을 보장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지적재산권제도의 발생

(1) 특허제도

산업재산권제도의 간접적인 유래라고 할 수 있는 특권 내지 독점권을 최초로 체계화한 법은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특허법(Venetian Patent Law)이다. 이 법은 이

미 오늘날의 특허가 설정하고자 했던 원칙인 실용성이나 신규성 요건,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16세기 중반에 들어 영국에서는 국왕이 공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일부개인에게 특권의 표시로서 특허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부여는 필요이상으로 남용되어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어 1623년에는 성문화된 세계최초의 특허법(Statute of Monopolies; 전매조례)이 제정되었다(Chris 2009). 이 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제외하고 독점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특허법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많은 나라가 이를 본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 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특허제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서의 산업재산권제도의 효시는 구한말인 1908년의 대한제국특허령, 의장령(칙령 제197호), 상표령(칙령 제198호)인데 이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제도를 빌려 공포·실시한데 불과하다(尹宣熙 2009).

(2) 실용신안제도

19세기말 당시 유럽에서 다른 나라보다 공업생산력이 뒤떨어져 있던 독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가나 국민들로 하여금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독자적인 제도를 창안한 것이 1891년에 제정한 실용신안법이다. 이 제도는 후발공업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여러 나라에서도 입법화하기 시작했다.

(3) 의장제도

의장제도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발생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11년 리옹에서 견직물도안에 관한 도용을 금지하였고, 1787년 참사원 명령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가구 및 직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의장은 특허나 상표와 구별되는 생활디자인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술저작물의 보호와 중복되기도 한다. 의장이 산업재산권의 일부가 된 것은 역사적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리옹을 여행하였을 때 리옹의 직물제조업자들이 미술저작권법상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함을 호소한 결과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 견직물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1806년에 제정되었던 것이다.

(4) 상표제도

산업재산권 중에서 상표는 그 기원이 고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 및 중세의 상표에서 현재의 상표법과 상표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국가에서 독점권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의 도용은 불법행위나 범죄로서 규제

되어 왔다.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간이로 신속하게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화한 것이 최초의 상표법인 프랑스 상표법이다. 이 상표법은 18, 19세기에 걸쳐 영국과 미국에서는 상표제도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관습법(Common Law)의 일부로서 발달하였다. 영국은 상표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862년에 상표법을 제정하였다.

(5) 저작권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념은 문학작품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서출판업자들이 받는 위협부담이 더욱 커지고 인쇄물 배포를 통치자들이 제한하기 위해 군주들이 특정인쇄업자에게만 일정한 출판물을 찍어낼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인쇄특권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17세기 자유주의사상이 출현하고 절대군주제가 붕괴되고 의회제도가 도입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The Act of Queen Anne)이 탄생되게 되었다.

3) 각국의 특허제도와 통일을 위한 노력

1825년에 여러 집단이 특허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구하였다. 영국의 의회위원회와 왕실위원회는 1851년에서 1852년, 1862년에서 1865년, 1869년에서 1872년의 3회에 걸쳐 특허제도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허제도에 소극적인 평가가 많아서 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貴族院은 특허출원의 엄격한 심사, 특허보호기간을 7년으로 삭감하고 모든 특허의 강제실시를 정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¹⁶⁾

독일에서는 각종 통상동맹이나 상업회의소가 특허법의 폐지를 환영하였다. 그리하여 1863년 국민경제학자회의에서도 발명에 따른 특허는 국민에 손실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프로이센정부는 북독일연방에 의한 특허법의 제정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공업국이면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특허법을 제정하지 않았던 스위스는 1851년, 1854년, 1863년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네덜란드에는 1817년에 성립한 특허법을 1869년에 폐지하였다(Abbott 1999, 228).

그러나 1870년대 이와 같은 특허반대운동은 보호무역주의와 결합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경쟁의 자유보다 산업, 무역의 국가적 보호에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사상이 세계적인 공황에 직면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자유무역론자들도 특허법을 강제로 실시할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특허보호주의자들과 타협하였

16) 이 법안은 그 후 특허반대운동이 약해졌던 1874년에 하원에서 폐지되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 1873년에 빈(Wien)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정부가 주최한 만국박람회에서 남북전쟁후 특허보호를 강화한 미국은 자국에서 출원된 발명이 오스트리아의 현행법상으로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였다. 당시의 오스트리아 특허법에는 특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오스트리아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미국도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박람회에 출품된 발명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여 외국의 특허권자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빈 주재 미국대사는 오스트리아 외무부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명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출품된 발명, 標章, 의장에 출품후 2년간 특별 보호를 받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만국박람회의 직후에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1883년에 외국인의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69개의 2국간 조약이 체결되었다(Ladas 1938, 58). 이어 1865년경까지는 통상조약이나 우호조약에 그 규정이 삽입되었다. 그 후에는 특별한 선언이나 협정에 의해 더 많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약에 의해 보호된 공업소유권은 상표권과 의장권에 한하여 특허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불충분하였다(Ladas 1938, 14).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이 모든 점에서 내국민과 유사하지만, 그 외의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권리보호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상호성의 존재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이 내국민에 인정된 권리를 명백하게 박탈하더라도 그에 복종하였다.

특허반대론은 자유무역론 내지 국민경제론에 일어난 학자나 일부의 사업가들이 주장하였다. 실업가의 실리적 관점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보호라는 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恣意’를 혼동한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의 생산력증대는 특허법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특허법의 제정에 의해 생산력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만 아니라는 논의에 대해 예를 들면 미국의 기계공업은 특허와 관계없이 발전되어 왔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독일의 제조업자들이 출석자의 상당수를 점한데다가 반대론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않아서, 특허긍정론이 회의의 대세를 가름하였다.

그 회의에서 다음 3가지 관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결정되었다(木棚照一 2009, 24). 첫째 발명의 보호는 모든 문명국에서 입법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들 국민들의 법의식에서는 지적노동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이 요구되어 그와 같은 보호는 발명의 명세서와 같은 완전한 조건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론과 사상을 직접적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공지하여 유일하고 유효한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야 만이 발명자의 활동으로 새로운 기술사상이나 시설을 도입하기까지 시간과 자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파리조약 성립까지의 역사

제2회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는 1878년 9월에 프랑스정부의 후원 하에 개최되었다.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으나 약 500명이 참가하였다. 그 중에는 11개국의 공식대표로 유럽제국의 상공회의소 기술·공업단체 48개 단체 대표자가 포함되었다. 참가자의 약 4분의 3이 프랑스의 실업가들로서 이들이 회의전체를 이끌었다. 이 회의에서는 특허만 아니라 상표나 의장 등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원칙적, 이론적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 이해되지 않으면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도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회의의 최초의 토의는 발명자 권리의 성질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에 제출된 원안은 “발명자의 권리, 공업의장 및 창작에 대한 권리, 및 제조자와 상인의 標章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이어서 시민법은 그와 같은 권리를 창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에 대안으로서 제출된 것은 프랑스 법률가 M. Clunet의 ‘발명의 권리 및 공업적 창작물의 권리는 일반적인 독점의 특허에 의해 발명자와 사회의 이익을 조정하는 시민법의 공평하고 유익한 창작물이다’(Harper 1824, 494)라는 안이었다. 그 점에 관한 토론은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나, 프랑스에서 참가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최초의 제안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자연법상의 재산권으로 하는 견해가 채택되었다.

이 회의의 당초의 목표는 당시 형성된 것으로 ‘만국우편동맹’과 같은 방법으로 공업소유권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다국간조약에 의한 가맹국간의 공통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동맹’(Union)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었다(Ladas 1938, 75f). 그러나 발명자의 권리 성질에 관한 논의가 끝나자 공통적인 규칙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각국현행법의 다양성에 직면하고 보니, ‘동맹’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회의의 다수를 점하는 프랑스 출석자는 통일공통규칙이 프랑스법률에서 가져올 것을 기대하였고, 그 외의 다른 나라의 대표자들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양보하지 않았다.

프랑스 및 몇몇 국가들은 특허청구원인, 청구유효성, 발명의 고도성 등을 심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발명자의 청구에 기인한 특허까지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나라에서는 특허가 인정되기 전에 예약 발명의 고도성, 유용성 등의 특허요건만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이외의 나라의 대표자들은 심사제는 지지했으나, 출석자의 다수를 접하는 프랑스는 무심사제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Ladas 1938, 77). 또한 화학물질, 양제조합물, 식품에 특허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분리되었으나, 이러한 특허성은 긍정할 수 있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의 대표들은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상설 국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¹⁷⁾

상설국제위원회는 그 회의의 직후의 1878년 9월의 회합에서 각국별로 5명의 위원으로 부회를 설치하는 것, 공식의 국제회의에 통일법의 기초가 되는 초안을 제출하는 것 등을 결정하였다.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부회는 직접 최소한의 통일규정을 포함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상무성 장관에게 회의의 결의와 함께 그 초안을 제출하여 공식의 국제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프랑스 정부에 발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프랑스의 상무장관은 각국의 국내법과 다른 많은 조항을 포함하여 탄력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Ladas 1938, 78). 이에 따라 M. Jagerschmidt가 기초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에 관한 조약초안(Projet d'une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이 만들어졌다. 이 초안은 국제적인 통일을 위한 규정은 현행법의 저축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내국민대우의 원칙(2조),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소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서 특허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조항(4조) 등 1878년 회의에 일치했던 조항을 포함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880년에 그 초안을 근거로 하여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최초의 공식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1880년 11월 4일에서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였다(Ladas 1938, 79). 그 회의의 목표는 통일법을 제정하는 것만 아니라 체약국의 국내법과의 저축을 회피하는데서 내국에서도 물론 외국에서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정한 ‘동맹’을 창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파리조약의 성립과 개정과정

1) 파리조약의 성립과 문제점

프랑스정부는 1880년 개최된 회의의 결정에 따라 회의에서 채택된 초안을 모든 공업국에 송부하였고, 제2회 공식 국제회의를 1883년 3월 6일에 개최하였다. 이 회

17)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signed 20 March 1883, entered into force 6 July 1884) 828 UNTS 107.

의에서는 20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조약초안 및 의정서를 충분히 심의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로소 채택이 되었다. 1883년 3월 20일 벨기에,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의 11개국에 의해 조약 18조에 의해 비준서가 교환된 1개월 후인 1884년 7월 7일에 파리조약이 발효되었다.

파리조약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첫째, 동맹의 국제기구 및 동맹국에 관한 제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국제사무국의 설립에 관한 규정(조약 13조, 의정서 제6항), 개정회의의 개최에 관한 규정(조약14조), 각 동맹국의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조약 15조), 새로운 가맹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조약16조)이다. 둘째, 동맹국에 일정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박람회 출품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조약11조),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위한 특별 국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규정(조약12조, 의정서 5항목)이다. 그 종류의 규정은 다음 3가지로 나누어졌다. 우선, 외국인법상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결국 동맹국 국민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조약2조)과 준동맹 국민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조약3조)이다. 파리조약체결전의 각국의 공업소유권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자국민에 대한 공업소유권을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 공업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장래에 자국의 공업소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호주의가 채택되었다. 그 규정은 상호주의를 부정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받은 점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파리조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일법규정이다. 예를 들면 특허제품의 수입에 의한 특허권의 불소멸, 상표·상호의 불법부착의 처리, 원산지의 허위표시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다.¹⁸⁾ 이러한 규정은 공업소유권 전체에서 본 극히 한정된 것이어서 각국법이 달라도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법적인 통일법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동맹국법에 기인하여 출원내지 기탁에 의해 일정권리 내지 이익을 인정하는 규정이다.¹⁹⁾ 이 규정은 출원국 및 본원국에서 정규모 행한 출원을 기초로 하여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저촉법과 실질법을 조합한 독특한 통일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파리조약의 개정과정

18) 동조약 8조, 9조, 10조.

19) 동조약 4조, 6조, 의정서 4항에서, 예를 들면 우선권에 관한 규정, 본원국에서 정식으로 기탁된 상표가 다른 동맹국에서도 보호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1883년 성립한 파리조약은 그 시점에서 본다하더라도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조약상의 제규정의 현실적 적용하기까지의 경험과 관련하여 조약상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약개정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하였다. 제1차 개정회의는 1885년에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1900년경까지는 파리조약은 동맹국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정회의를 자주 개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당시는 유럽제국에 있어서 파리조약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동맹의 의의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파리조약의 성립에 많은 공헌을 했던 프랑스에서는 국내에서 그 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이 격화되었다. 그 원인의 하나는 그 당시 프랑스 경제계의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산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파리조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외의 산업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파리조약에 대한 격렬한 반대운동은 1885년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파리 리옹, 보르도, 마르세이유 등의 상업회의소 및 리루와 노르도의 제강회의장에서는 격렬한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주로 파리조약 제2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 제3조의 비동맹국민포함, 제4조의 우선권, 제5조의 특허제품의 수입에 의한 특허권상실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파리동맹에 의해 산업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리조약의 제3차 개정회의는 1897년 12월 1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파리조약의 추가·수정조항 외에 지난 회의에서 성립된 ‘標章의 국제적인 등록에 관한 협정’의 추가조항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제4차 개정회의는 1911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미국에서도 공업소유권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제5회 개정회의는 1925년 10월 8일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리동맹국 22개국 중 14개국이 참전함에 따라 교통이 단절되어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는 정지되었으나, 탈퇴를 선언한 나라는 없었으며, 특허료의 납부기간과 기간연장 등의 임시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제6회 개정회의는 1934년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파리조약 50주년의 기획으로서 40개국의 동맹국 중에서 34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 등의 민간국제기구 대표들도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개정회의는 중단되었으나 조약을 파기한 나라는 없었다. 제7차 개정회의는 1958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다. 31개국의 동맹국대표들은 무엇보다도 우선기간의 연장·정지, 권리의 회복 등의 조약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제8차 개정회의는 1967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파리동맹과 오스트리아정부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각종 국제사무국을 통합하여 현대적인 국제행정기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제9차 개정회의는 1980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지적재산권은 WTO체제 성립에 따른 TRIPS협정에 의해 국제적인 권리가 되었다. 이때부터 지적재산권은 최소한의 보호기준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어 글로벌화에 따른 지적재산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은 특정국가의 영역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屬地性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국내법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각국이 합의하여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이 형성되어 120년 이상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한국 등의 국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혁신을 통해 미국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해야 만이 새로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 간의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특허 공세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삼성은 현재 미국에서 특허 출원이 두 번째로 많으며, 현대자동차·LG전자 등 다른 대기업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이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지적재산권관련 법규나 방침에 따라 특허 내용과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기업 간 경쟁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지적재산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TRIPS 협정 외에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에 관한 내용의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과 함께 단순히 국제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지적재산법이나 국내 소송제도의 상위등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상춘 · 김영재, 2008, “지적재산권정책과 경제성장 재조명”, 「국제경제연구」, 14(2), 101-133.
- 尹宣熙, 2009,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정상조 · 박준석, 2011, 「지적재산권법」,弘文社.
- 허홍호 · 정윤세, 2009,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24(4), 251-271.
- 木棚照一, 2009, 「國際知的財産法」, 日本評論社.
- 木棚照一 · 中山 真理, 2004, “國際知的財産紛争の解決方法に関する研究 —東アジアの視点から—”, 季刊 企業と法創造, 「知的財産法制研究」, 早稲田大学21世紀COE 《企業法制と法創造》 総合研究所.
- Winn, Jane K., 2010, “International trade laws :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국제거래법연구」, 19(1), PP. 207-210
- Abbott, Frederick, Thomas Cottier, and Francis Gurry, 1999,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mmentary and Materials*, Part One.
- Busche, Jan and Peter-Tobias Stoll, 2007, TRIPS, International und europaisches Recht desgeistigen Eigentums, Kommentar.
- Dinwoodie, Graeme B., William O. Hennessey, and Shira Perlmutte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Documentary Supplement*, Lexis Nexis.
- Drahos, Peter, Ruth Mayne, 2002,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nowledge, Access and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 Feather, John, 1980, *The Book Trade in Politics: The Making of the Copyright Act of 1710*, Publishing History.
- Goldstein, Paul 2001, *International Copyright: Principles,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en, Wendy J., 2003, *The Oxford handbook of legal studies* (edited by Peter Cane; Mark Tushnet), Oxford University Press.
- Harper, William, 1824, Reports of cases determin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Carolina.
- Hatridge, David and Arvind Subramanian, 1989,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Issues in GATT, 22 Vand. J. Transnat' L. 893, 902.
- Kohler, Josef, 1980, Handbuch des deutschen Patentrechts. Mit Sach- und

- Schlagwortverzeichnis, Scientia Verlag.
- Kur Annette, with the assistance of Marianne Levin, 201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fair world trade system : proposals for reform of TRIPS : Edward Elgar.
- Ladas, Stephen P., 1938,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Harvard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Macmillan 8.
- Letterman, G. Gregory, 2001, Basic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Transnational Pub.
- Long, Doris E., Damato Long, and Anthony A. D'Amato, 2000, Coursebook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ale Cengage.
- Reichman, Jerome. H., 1995, Charting the Collapse of the Patent-copyright Dichotomy: Premises for a Restructure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13 *Cardozo Arts & Ent. L. J.*
- Stack, Alexander, 2011, International patent law : cooperation, harmonization and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WIPO and the WTO, Edward Elgar,
- Stoll, Peter-Tobias, Jan Busche, and Katrin Arend, 2008, WTO-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 YU, Peter K., 2004, Currents and Cross currents in the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38 *Loy. L. A. L. REV.*, 357-58.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signed 15 April 1994,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1869 UNTS 299.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signed 15 April 1994,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1869 UNTS 299.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signed 20 March 1883, entered into force 6 July 1884) 828 UNTS 107.
- GATT, 1986,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pt. I. D, Sept. 20, 1986, 25 *L. LM.* 1623, 1626.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adopted 15 April 1994,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1867 UNTS 190.
- TRIPS Negotiating Group, Guidelines and Objectives, *supra* note 19, at 2.
- Winn, Jane K., 2010, "International trade laws :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국제거래법연구」, 19(1), 52-96.
Chris, Dent, 2009, "Generally inconvenient : The 1624 Statute of Monopolies as Political Compromise",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20(1), 273-289.

The History and Origi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cused on Paris Convention-

Jae-Hwan Chung* · Bong-Soo Lee**

Abstrac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has a long history in civilization. This Paper analyzes history and origi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the institution which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erform a variety of functions. They promote innovation and creative expression, and they protect investment. New products and methods for producing them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e productivity. It is important, however, to bear in mi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lso imposes social and economic costs. It restricts the use of knowledge, even if for a limited time.

The Paris Convention establishes a right of priority an applicant from one contracting state who files a patent application in a contracting state can use his or her first filing date as the effective filing date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so long as the applicant files another application for the patent within a year from the first filing. The bene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re not equitably shared among the richer and poorer nations. Just as national legislators must seek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various domestic stakeholder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o must those responsible for negotiations at the multi-lateral level seek to strike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industry and consumers, and among the wealthy and the poor.

The WTO's TRIPS Agreement is an attempt to narrow the gaps in the way these rights are protected around the world and to bring them under common international rules.

* Research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ey word〉 Intellectual Property, Paris Conven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